

침묵 속 위법, 익명 신고로 드러난 4,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.7억 청산!

- 「재직자 익명 제보」를 통한 기획 감독('25.9~12월) 결과 발표
-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예정

“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,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.(○병원)” “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,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.(H제조업)”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, '26.2.2(월)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* ('25년 익명제보 접수) 총 3차례 (3.4~3.28, 6.16~7.4, 7.28~8.31)

감독 결과, 166개소 중 152개소(91.6%)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 되었으며,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▲150개소(533건) 시정지시, ▲6개소(6건) 과태료 부과, ▲8개소(12건)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.

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, ❶ 우선 118개소에서 총 4,775명 63.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.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“공짜노동(12개소)” 사례 뿐 아니라,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(2개소)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☒ 공짜 노동 및 최저임금 위반 사례

- ▲ (ㄸ 음식점) 2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음식점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'24.10월~'25.9월까지 연장,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
- ▲ (ㄴ 호텔)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였으나,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1.7백만원 체불 적발

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,538명의 48.7억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,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.

☑ 체불 청산 사례

- ▲ (○ 병원)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'25.3~5월 임금 일부인 2.8억과 법정 수당 2.4억, 연말정산 환급금 1.3억 등 총 6.6억 체불 →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
- ▲ (○ 제조업)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'25.8~9월 임금 총 3억원 체불 → 법인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전액 청산

또한,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,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.

☑ 청산 의지 없는 사업장 범죄인지 사례

- ▲ (ㄴ 병원) 아동사고예방 교육,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'25.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 체불
- ▲ (ㄷ 제조업) 거래량 감소,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.7억원 및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등 총 3.7억 체불
- ▲ (ㄹ 제조업) 사업 수주 후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'24.12월부터 '25.10월까지 임금을 미루면서 총 직원 10명의 임금 3.4억원 체불

② 임금체불 외에도 ▲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(31개소)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, ▲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(68개소), ▲취업규칙 미신고(32개소)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.

☑ 장시간 노동 사례

- ▲ (H 제조업)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 비교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50명 적발
- ▲ (ㄷ 도매업)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한도 초과 총 51회 적발

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(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)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2.2(월)부터 「재직자 익명제보센터」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,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. 여전히 체불,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.

* (익명제보센터) labor.moel.go.kr 접속 후 ‘민원신청·조회’ 화면에서 신청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,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.”라며, “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, 가짜 3.3 위장고용,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·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길 (044-202-7528)
			주무관	오성곤 (044-202-7531)

재직자 ^{임금체불 등} 익명제보센터

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,
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신고가
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심하고
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상시
운영합니다.



임금체불,
노동법 위반
재직자들도
안심하고
제보하세요!

노동포털
(labor.moel.go.kr)
→ 민원신청, 조회



임금체불

- 사업주가 급여, 각종 수당 등 임금 과소지급 또는 미지급

장시간, 공짜노동

- 고정으로 약정한 시간초과 등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 미지급
-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

비정규직 차별

-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기간제·단시간·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, 복리후생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

익명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

- ▶ (제보내용)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(사업장명·주소·회사 연락처 등), 세부 피해내용 (체불내역 등) 및 증빙자료
- ▶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 제보센터가 아닌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하여 진정 또는 고소 등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